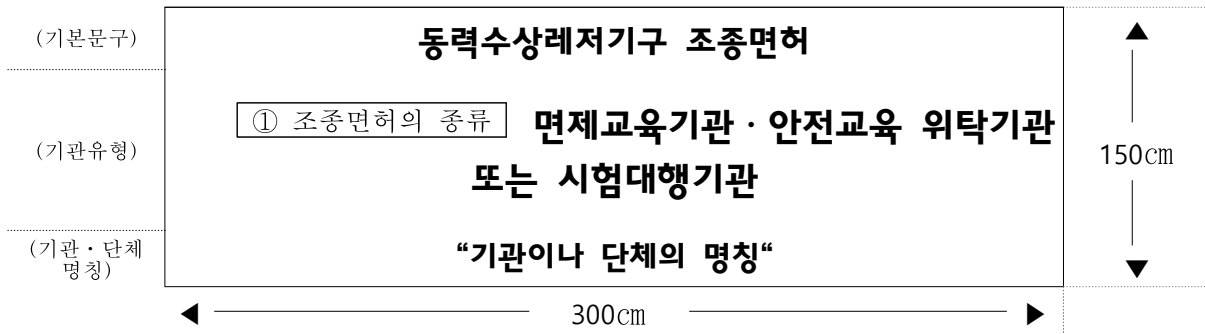


■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[별표 2]

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· 안전교육 위탁기관 또는 시험대행기관 표지판의 규격
(제8조제4항 · 제13조제4항 · 제20조제4항 관련)

- 표지판의 색상
 - 바탕색: 파란색(C100+M75+K50)
 - 글자: 흰색
- 표지판의 재질: 폴리염화비닐(PVC CAL)
- 표지판의 크기: 가로 300센티미터 및 세로 150센티미터
- 표지판의 글자 규격: 윤고딕 250포인트
 - 기본문구: 23센티미터(세로 기준)
 - 기관유형: 15센티미터(세로 기준)
 - 기관 또는 단체 명칭: 15센티미터(세로 기준)



비고

- ①란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종면허의 종류를 적는다.
- 해당 기관 또는 단체가 면허시험 면제교육기관 · 안전교육 위탁기관 및 시험대행기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표지판에 적는다.

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요트 면제교육기관 · 일반(1급 · 2급) 시험장 “기관이나 단체의 명칭”	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▪ 일반(2급) · 요트 면제교육기관 ▪ 일반(1 · 2급) · 요트 시험장 ▪ 수상안전교육장 “기관이나 단체의 명칭”
(예시) 요트조종면허 면제교육기관이면서 일반 조종면허(제1급 및 제2급) 시험대행기관인 경우	(예시) 일반조종면허(제2급) 및 요트조종면허 면제교육기관이고, 일반조종면허(제1급 및 제2급) 및 요트조종면허 시험대행기관이면서 안전교육 위탁기관인 경우